



감사위원회

영성훈련

2023.07.01

순서

I

예

배

II

주제 발표



01

예 배



인도 :이홍기 장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02

찬 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그 크신 **하나님** 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저 높고 높은 별을	3. 죄 범한 영혼 구하려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6. 주 믿지 않던 영혼들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9. 하늘을 두루 마리	10. 한 없는 하나님의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 | | | | |
|-----------------|----------------|----------------|----------------|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2. 저 높고 높은 별을 | 3. 죄 범한 영혼 구하러 |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
|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 6. 주 믿지 않던 영혼들 |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
| 9. 하늘을 두루 마리 | 10. 한 없는 하나님의 |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



죄 범한 영혼 구하려 -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 죄 용서 하-셨네

- | | | | |
|-----------------|----------------|----------------|----------------|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2. 저 높고 높은 별을 | 3. 죄 범한 영혼 구하려 |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
|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 6. 주 믿지 않던 영혼들 |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
| 9. 하늘을 두루 마리 | 10. 한 없는 하나님의 |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



하나님 크신 사랑은 -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저 높고 높은 별을

3. 죄 범한 영혼 구하러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6. 주 믿지 않던 영혼들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9. 하늘을 두루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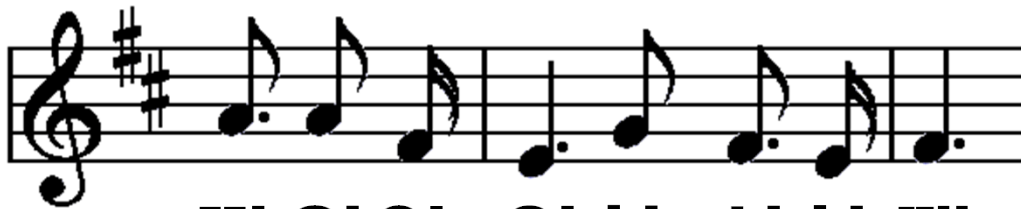
10. 한 없는 하나님의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2. 괴로운 시절 지나 가고



땅위의 영화 쇠할 때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저 높고 높은 별을

3. 죄 범한 영혼 구하러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6. 주 믿지 않던 영혼들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9. 하늘을 두루 마리

10. 한 없는 하나님의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주 믿지 았던 영혼 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저 높고 높은 별을

3. 죄 범한 영혼 구하러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6. 주 믿지 았던 영혼들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9. 하늘을 두루 마리

10. 한 없는 하나님의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주 믿는 성도 들에게 - 큰 사랑 베풀-푸사



우리 의 **죄 사했으니** - 그 은혜 잊-을까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저 높고 높은 별을

3. 죄 범한 영혼 구하러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6. 주 믿지 않던 영혼들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9. 하늘을 두루 마리

10. 한 없는 하나님의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저 높고 높은 별을

3. 죄 범한 영혼 구하러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6. 주 믿지 않던 영혼들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9. 하늘을 두루 마리

10. 한 없는 하나님의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저 높고 높은 별을

3. 죄 범한 영혼 구하러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6. 주 믿지 않던 영혼들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9. 하늘을 두루 마리

10. 한 없는 하나님의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한 없는 **하나 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저 높고 높은 별을

3. 죄 범한 영혼 구하러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6. 주 믿지 않던 영혼들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9. 하늘을 두루 마리

10. **한 없는 하나님의**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의 크신 사랑 -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 채우지 못-하리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저 높고 높은 별을

3. 죄 범한 영혼 구하러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6. 주 믿지 않던 영혼들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9. 하늘을 두루 마리

10. 한 없는 하나님의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 저 높고 높은 별을

3. 죄 범한 영혼 구하러

4. 하나님 크신 사랑은

5.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6. 주 믿지 않던 영혼들

7. 주 믿는 성도들에게

8. 하나님 크신 사랑은

9. 하늘을 두루 마리

10. 한 없는 하나님의

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12. 하나님 크신 사랑은

02

기 도



최현구 장로

성 경 (사도행전19장20절) 봉독 : 이홍기 장로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03

특송(우쿨렐레 연주와찬양)

지도 :강길레권사

말씀 : 흥왕하는 복음



말씀 : 박동진 목사

주 기 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I

주제발표

01

감사위 운영 규정

박노익 장로

02

감사위원회 시행세칙

정인욱 장로

03

행정감사, 회계감사 유의사항

이흥기 장로

04

광 고

이흥기장로

0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박노익 장로

충현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1. 현황 : 사전협의의 대상과 범위

- 1) 500만원 이상의 구매 업무
- 2) 신규 2억원 이상과 보수 5,000만원 이상의 공사 대상
- 3) 용역, 자문 등의 업무는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2. 개정의 필요성

- 1) 다양한 신규 공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세심한 확인이 더 필요해진 상황으로 소규모 금액 공사에도 감사를 확대할 필요 있음
- 2) 교회 행정업무가 더 세분화 및 고도화되어 가기 때문에 공사 이외의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또는 전문 집단을 통한 용역 또는 자문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3. 개선안 : 사전협의 대상 및 범위

- 1) 공사 : 2억원 => 1억원으로 하향 조정 (확대)
- 2) 용역 또는 자문 : 1천만원 이상 (신설)

4. 개정 운영규정 조항

- 1) 제13절 감사위원회, 제 75조 (감사의 구분 및 방법), 1항
- 2) 2호 : 개정, 3호 : 신설
- 3) 감사위원회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자의 결재 받을 공사의 금액 하향 개정 및 추가 대상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2) 공사 : <u>신규 2억 이상</u> , 보수 5천만원 이상	2) 공사 : <u>신규 1억 이상</u> , 보수 5천만원 이상
용역, 자문 규정 없음	3) 용역 및 자문 : 1천만원 이상

5. 개정 감사위원회 감사 시행세칙 조항

- 1) 제4장 일상감사와 사전협의, 제23조 (사전협의의 대상과 범위), 1항
- 2) 2호 : 개정, 3호 : 신설
- 3) 교회 운영규정 변경에 상응하여 감사위원회 시행 세칙 개정, 개정 내용은 운영규정 개정 사항과 동일 (상기 참고)

6. 운영규정 본문 발췌

; 제75조(감사의 구분 및 방법)

감사는 일상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분하며 서면감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시 현장감사를 실시한다.

1. 일상감사는 재정담당 회계부서의 일상 입출금과 관련 증빙서 등을 감사한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감사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1) 구매 : 5백만원 이상
- 2) 공사 : 신규 2억 이상 (신규 1억 이상), 보수 5천만원 이상
- 3) 용역 및 자문 : 1천만원 이상 (신설)

8. 충현교회 회칙 및 운영규정 중 감사위원회 내용 정리 발췌

가. 회칙에서 - 제9장 제직회(기호 및 문항은 회칙대로 복사)

제36조(직무와 권한)

제직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의 처리.
2. 제직회는 공동의회에 1년간의 회계 결산, 다음 해의 교회예산, 기타 보고를 해야 한다.
3. 본교회의 감사위원회는 금전출납사항을 정기적으로 감사 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나. 운영규정에서 - 제13절 감사위원회(기호 및 문항은 규정대로 복사)

가. 제71조(감사위원회의 업무와 조직)

감사위원회는 교회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와 각 기관과 산하부서의 회계감사 및 행정 업무감사, 기타 당회가 의뢰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2. 감사위원회는 실행위원 외에 필요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3. 제75조 1항에 정한 업무의 검수

나. 제72조(감사위원의 의무)

감사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어야 하고 편견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감사보고서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피감사 자와 해당 부서 장에게 행정 지도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다. 제73조(감사위원의 권한)

감사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독립되며 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관계 서류, 장부, 증빙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청구
4. 각 위원회 및 각 기관의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지도 교육
5. 기타 감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제74조(감사의 대상 및 종류)

회칙 제36조 3항에서 정한 감사의 대상은 당회 산하의 위원회, 기관, 부서 및 자치회이며, 감사의 종류는 회계 감사와 행정감사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사한다.

1. 회계감사
 - 1)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적정성 여부 확인
 - 2) 재산의 취득, 보관, 관리, 처분 등의 사실 및 장부 정리, 전표 처리 등의 확인
2. 행정감사
 - 1) 비품, 서류의 보관 및 기록 상태
 - 2)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3. 기타 당회가 의뢰한 감사

마. 제75조(감사의 구분 및 방법)

감사는 일상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분하며 서면감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시 현장감사를 실시한다.

1. 일상감사는 재정담당 회계부서의 일상 입출금과 관련 증빙서 등을 감사한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감사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1) 구매 : **5백만원 이상**
 - 2) 공사 : **신규 2억 이상, 보수 5천만원 이상**
2. 정기감사는 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각 기관의 예산에 근거한 집행과 관련 서류를 감 사한다.

3. 수시감사는 정기감사 외에 보완적인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4. 특별감사는 당회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5. 현장감사는 필요한 경우 시설공사 또는 구매입찰 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가격결정, 자재 조달 및 공사시행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6. 위의 감사 시에 필요한 행정감사를 병행 실시한다.

바. 제76조(감사결과 보고)

1. 감사결과는 정기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특별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회에 보고하여 다음 사항을 시정토록 요청한다.
 - 1)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 2) 관계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요구

사. 제77조(시정요청)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회에 보고하고 부서 또는 기관장에게 시정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아. 제78조(시정조치 결과 보고)

위 제77조의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제79조(소명기회/이의신청)

위 제77조의 시정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 책임자가 이에 대한 소명할 사유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명서 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당회에 의뢰할 수 있다. 당회는 해당 건에 대한 소명이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 건에 대한 종결을 결정하거나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재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건을 재심하게 하고 재심 소위원회는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심 소위원회에서 판정된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제80조(회계실무교육 및 지도)

감사위원은 각 기관의 회계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업무지도를 담당한다.

9. 운영규정에 따른 업무, 조직, 의무, 권한 등

가. 업무와 조직 - 교회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와 각 기관과 산하부서의 회계 및 행정 업무 감사, 기타 당회가 의뢰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 1)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 2) 실행위원 외에 필요시 전문가를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정한 업무를 검수한다.

나. 감사위원의 의무 - 감사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위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노력해야 한다.
 - 2)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과 공정과 합리적 이어야 하며 편견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 되서는 아니 된다
 - 3)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감사보고서 이외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 단, 피 감사자와 해당 부서장에게는 행정 지도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다. 감사위원의 권한 - 업무수행을 위하여 독립되며 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감사부서에 대하여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3) 감사부서의 회계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4) 각 위원회 및 기관의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지도 교육을 담당한다.
- 5) 기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감사의 대상 및 종류 - 당회 산하의 위원회, 기관, 부서 및 자치회이며 회계감사와 행정감사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사한다,

- 1) 회계감사
 - 가)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적정성 여부 확인
 - 나) 재산의 취득, 보관관리, 처분 등의 사실 및 장부정리, 전표처리 등의 확인
- 2) 행정감사
 - 가) 비품과 서류 등의 보관 및 기록상태
 - 나) 제도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 3) 당회가 의뢰한 감사

마. 감사의 구분 및 방법 - 일상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분하며 서면감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시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

1) 일상감사는 재정담당 회계부서의 일상 입출금과 관련 증빙서 등을 감사한다.

단, 아래의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감사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구매 : 5백만원 이상

└ 공사 : 신규 2억 이상, 보수 5천만원 이상

2) 정기감사는 년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각 기관의 예산에 근거한 집행과 관련서류를 감사한다.

3) 수시감사는 정기 감사 외에 보완적인 감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4) 특별감사는 당회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5) 현장감사는 필요한 경우 시설공사 또는 구매 입찰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가격결정, 자재 조달, 공사 시행 등 참여하여야 한다.

6) 위의 감사 시에 필요한 행정감사를 병행 실시한다.

바. 감사결과 보고

1) 감사결과는 정기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특별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한 경우 당회에 보고하여 시정토록 요청한다.(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은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사. 시정요청 -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회에 보고 하고 부서 또는 기관장에게 시정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아. 시정조치 결과 보고 - 시정조치의 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감사위원장에게 조치결과를 통보 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소명기회/이의조치 - 시정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 책임자는 시정요청에 대한 소명할

사유나 이의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소명서 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당회에 의뢰 할 수 있으며, 당회는 해당 건에 대한 소명이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동 건에 대한 종결을 결정하거나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재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건을 재심하게 하고 재심 소위원회는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 심 소위원회에서 판정된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회계실무 교육 및 지도 - 각 기관의 회계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업무지도를 담당한다.

02

감사위원회 감사 시행세칙



정인욱 장로

6. 감사위원회 감사 시행세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충현교회 회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현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감사관련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회운영과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준거)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위원 및 실행위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충현교회 회칙 및 운영규정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움에 도움이 되는지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인의 직무보장 및 선정)

1.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할 감사인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선임하며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가 직무분장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인의 의무 등) * 별첨 - 감사인 선서

감사위원장은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의 의무에 반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할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사인의 소명을 받아야 하며 그 소명이 진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자료 등의 수집과 처리)

1. 감사인은 필요에 따라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검토·분석하여 감사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감사인은 감사대상에 대하여 인적 물적 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3.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수집자료 등을 감사자료 접수처리부에 기록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검사
- ②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처리방안에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관부 서’ 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회보하게 한다.
- ③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감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문 처리한다.

제6조(감사업무의 위촉과 입회)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와 관련되는 전문가와 기술 소지자에게 해당사항에 관해 감사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7조(감사계획)

1. 감사위원회는 교회회칙 및 운영규정 등에 의해 처리된 업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매년 1월 수립 의결하여 당회에 보고하고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감사의 목적 및 기본방향
- ② 감사대상 업무 및 범위
- ③ 감사대상 소관부서 및 범위
- ④ 감사 착안사항

2. 위 감사계획에는 감사의 구분과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감사대상 업무 및 범위가 적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정회계에 대한 감사는 각 기관의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업무에 대한 감사로 년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사계획 수립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하여 감사대상 부서 등이 변경될 경우
- ② 행정관청이나 당회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
- ③ 그 밖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감사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감사계획을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 통지 및 준비)

1. 감사위원회는 감사실시 30일전까지는 감사의 실시계획을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소관 부서의 장은 감사 착수 2주 전에는 필요한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업무의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중점 감사대상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여 감사인 상호간에 통일된 감사기준을 정립하여 필요할 경우 본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에 검토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중복감사의 지양)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창고 등의 봉인)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대상 물건 등을 긴급히 봉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물 관리자 등의 참여 하에 봉인 표시하고 봉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봉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감사장소)

감사는 소관 부서에 가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실시)

1.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필요한 경우 각종 서류의 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 요구, 교회의 상대 거래처에 대한 조사와 자료 청구, 각종 필요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감사인은 감사내용을 확인 또는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서, 경위서를 요구하거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감사실시 중 긴급하게 시정할 사항이나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안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감사일보 및 결과의 보고)

1.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에는 매일의 감사수행 상황에 대한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감사일보는 감사수행 결과 보고서류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은 종합보고 시 감사인의 처분의견이 제시된 감사수행 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처리과정에서 사무처리 내용 또는 책임한계가 불분명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고, 질문서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지정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결과 처리

제14조(처분요구안 등의 작성)

1.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업무수행자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하는 등 평가를 실시한다.
2. 처분요구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이 현장에서 현지조치 요구서를 발부하고 그 조치결과를 포함시켜 2주 안에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공통적으로 반복하여 지적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전달한 후 동일 유형이 반복하여 지적될 경우에는 업무배제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감사결과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시정 또는 변상 등을 요구할 때는 조치 기한을 지정(단기는 1개월, 중기는 3개월,장기는 6개월 이상)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교회에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안, 형사책임이 발생 하는 사안, 변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안과 당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요구한 특정감사는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처분사항의 집행)

1. 감사결과 조치 요구를 받은 자는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별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 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조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감사 위원장에게 우선 통보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된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종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① 시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②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2. 변상명령 처분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변상책임자에게 변상명령서를 교부하고 기간 을 정하여 변상금을 납부토록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① 변상 기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변상에 대하여는 보증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상금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변상 의무가 있는 성도가 변상 집행 기간 중에 전보 등으로 소속부서 또는 기관을 달 리하였을 때에도 변상조치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그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관 리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사항의 집행종결 및 미결사항 독촉)

1.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및 조치결과를 검토·확인하여 매 건별 종결여부를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 제1호의 통보서가 제출되 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3. 집행독촉장은 3개월에 1회씩 발부하고 이를 집행독촉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조치결과의 재조치 요구)

감사위원장은 소관 부서가 취한 감사결과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재조치 요구를 하 고 자 할 때에는 그 조치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재조치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감사결과 조치를 통보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소명할 사유나 이의가 있어 이의 신청하고자 할 경우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을 당 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이의 신청서 처리)

당회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 결정
2. 원 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
3. 원 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 결정
4. 원 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 결정

제21조(재심의 소위원회)

당회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재심 소위 원회를 구성하여 재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제22조(대장의 비치)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요청안, 조치결과와 이의신청 미 재심의 요구사항과 그 처리결과등을 감사결과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일상감사와 사전협의

제23조(사전협의의 대상과 범위)

1. 사전협의의 대상과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500만원 이상의 구매업무

② 신규 2억원 이상과 보수 5,000만원 이상의 공사

2. 소관 부서의 장은 위 제1항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3. 감사인은 제2항의 결재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사전협의의 의뢰)

1. 사전협의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소관 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안으로 기존에 사전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요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감사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사전협의 대상 업무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사전협의 시기)

1. 사전협이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당회의 의결과 당회장 결재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 결재 후

② 소관부서의 장의 전결사항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③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은 부의 안건 제출자의 결재 후

2. 제1항 각 호의 시기에 사전협의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는 소관부서의 장이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서류의 내용과 긴급한 사정을 설명하는 등 사전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사전협의 실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사전협의 결과 통보 등)

1. 사전협의 처리결과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장은 일상감사를 요청 받은 날(사전협의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사전협의를 필요 한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사전협의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사전협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는 결재서류 이면에 별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처리기간 내에 사전협의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협의를 의뢰한 소관부서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 혹은 감사의견에 대한 회신서를 감사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서 송부 시 회신기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27조(감사의견서의 효력 및 조치)

1. 감사의견서는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의 이의가 없으면 채택된 것으로 본다.
2.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에 대한 재검토 요청서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위원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사유와 그 처리계획을 제출 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된 의견서에 따라 재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사후관리 및 불이행에 대한 조치)

감사위원장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견 조치결과와 사전협의를 거치 지 않은 서류의 유무에 대하여 수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의견서 내용대로 조치하지 않거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서류가 발견될 때에는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전도위원회 감사

제29조(남녀 전도회 및 동역교회 전도지원 사역비)

1. 남녀 전도회 감사는 전도위원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2. 동역교회 전도지원 사역비 감사를 전도위원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8 월), 하반기(11월)에 사역비 회계보고서 사본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선교위원회 감사

제30조(단기선교 회계보고서)

1. 단기선교 회계보고서 감사는 선교위원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감사 결과를 상반기(5월), 하반기(11월)에 단기선교 회계보고서 사본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시행규칙은 당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03

행정감사, 회계감사 유의사항



이홍기 장로

감사위원회 영성훈련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감사합니다